

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각 연구소의 발전과 효율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경운대학교의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특수목적연구소 : 경운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, 연구, 봉사 등의 특수 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소
2. 일반연구소 : 연구소의 사업, 연구원의 구성 및 연구분야 등이 경운대학교 또는 수 개의 대학에 관련된 연구소
3. 인준연구소 : 총장의 인준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소

제3조(설치신청)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설립신청서
2. 연구소 규정(안)
3. 초년도 사업계획서
4. 초년도 재정계획서

제4조(연구소의 인준여부)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의한 연구소의 인준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준한다.

1. 기존 연구소에 미치는 영향
2. 인건비, 연구비, 운영비 등의 재정의 확보 및 운영 가능성
3. 연구소의 목적 및 기능의 유지 가능성
4. 연구원의 확보 가능성

제5조(연구소장의 임명) 각 연구소장의 소장은 각 연구소의 발기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) 특수목적 연구소의 경우는 경운대학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비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하고, 그 외 연구소의 경우는 교비지원 없이 교외연구지원금 및 기타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사업계획)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위

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보고)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수행한 사업 보고서 및 결산 결과를 산학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평가) 위원회는 매년 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또한 매 3년 마다 3년간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